

[]징수유예
폐기물처분부담금 []분할납부
[]징수유예 기간 연장 []승인 []불승인 통지서

관리번호		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	사업장 주소	

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				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금액
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	금액	
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기간		20 . . .부터 20 . . .까지		
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				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분할납부기한	분할납부금액

불승인의 사유

귀하가 20 . . . 신청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승인, []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직인